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7292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72920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 9. 24 선고 2014나8377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A

피고, 피상고인B

판결 선고 2015. 1. 29.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 9. 24. 선고 2014나837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이 사건은 소액사건이므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고할 수 있는데 상고이유의 주장은 그 어느 것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민일영

대법관박보영

주심대법관김신

대법관권순일